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8
----------	-----

제안연월일 : 2007. 7.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2.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8조의2제3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을 “부위원장”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설></u></p>	<p>제8조의2(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생략) <u>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u></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⑦ (생략)</p>	<p>제8조의2(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개정안과 같음) <u>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부위원장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⑦ (개정안과 같음)</p>